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6. 6. 2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42호로 2016년 6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민간 전문가 참여를 규정하고 연임횟수를 규정하여 체육진흥기금운영의 투명성 유지 및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 (안 제8조제2항)
- 나. 위원의 연임횟수 (안 제8조제4항)
- 다. 팀장명칭 변경 (안 제8조제7항, 안 제12조제2항)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5.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정(2005.12.28) 당시부터 규정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 조항을 그대로 조례에 기재하고, 그 밖에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및 위원회 간사(팀장)명칭 변경 등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임.

-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민간 전문가 3분의 1이상을 참여토록 하는 것은 기금 운용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도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문호개방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에는 ‘시행령’에 따라 이미 민간 전문가 3분의 1이상이 참여<sup>1)</sup>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중복하여 조례에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입법체계나 입법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1) 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명)

계	공무원	구의원	민간인
7	3	1	3

# 참 고 자 료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